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출년월일 : 1998. 7. 25.

의안번호	4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행정규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추가 삽입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제3조중 제21호는 제22호로 하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

□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관계부처승인 : 강원도 지침 - 별첨

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마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평창군조례 호

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, 제21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결정사항)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.	제3조(결정사항) (현행과 같음)
1. ~ 20. (생략)	1. ~ 20.(현행과 같음)
<신설>	21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 등에 관한 사항
21. (생략)	22. (현행 제21호와 같음)

관 계 법 령 발 췌 서

□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(적용범위)

①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
2. 형사·행형 및 보완처분에 관한 사무
3. 국가안전보장, 국방, 외교, 통일,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
③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,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, 기존규제의 정비,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法令에 根據없는
行政規制整備 推進計劃

1998. 4.

江　　原　　道

□ 규제정비대상별 실명제에 따른 담당공무원 책임이행

○ 규제사무에 대한 폐지등 자체정비후에도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를 계속 운영하는 사례 발견시 엄중문책 조치

Ⅴ. 行政事項

□ 자료제출

○ 도 실과·사업소에서는

① 각종행정규제 목록을 작성 5.30까지 자치행정과 제출 (서식 1)

※ 목록작성대상 : 영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 유형(범위)에 해당하는 모든 사무(법령 포함)

② 「규제정비실적 및 계획서」를 작성 6.10까지 제출 (서식2.3)

※ 작성워드 : 아래 한글 3.0(win용) W/P로 작성(A4)
- 원본 및 3.5"디스켓 1매 제출

□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개정 및 민간인 위원위촉 협조

○ 제3조(결정사항)에 도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 추가삽입
(19의21.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의 심사·정비등에 관한사항)

○ 민간위원위촉 : 기업인, 변호사, 교수, 경제·사회단체 관계자 등(4~5명 정도)